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10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2.

발의자 : 양부남 · 권향엽 · 김문수
김한규 · 김현정 · 이개호
이광희 · 이해식 · 전진숙
정진욱 · 채현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수입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말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. 그러나 혈행법상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해 1회 지방세수입 결산 통계만 공개해 일반 국민은 지방세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이 월별 · 세목별 수입징수 현황을 포함한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이를 통해 지방세의 흐름과 지방재정의 현황을 행정안전부 차원에

서 총체적·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해, 중장기 지방세 정책
방향 수립에 참고하고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할
수 있도록 함(안 제149조).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
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.

제149조제3항 중 “공개”를 “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”로 하고,
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
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
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·공개 및 제
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
석·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통계정보
시스템을 구축·운용할 수 있다.

օ)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9조(통계의 작성 및 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·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149조(통계의 작성 및 공개) ① ----- ----- ----- ----.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-----.
<신 설>	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·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<신 설>	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, 자료제출,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·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용할 수 있다.

⑦ -----제6항-----

-----.